

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3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여
나가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 기준액 제한 범위 상향 조정(안 제2조제1항)

- 3퍼센트 → 5퍼센트

나. 보조 기준액 미포함 조항 삭제(안 제2조제3항)

③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·도비를 재원
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다. 보조사업 범위 정비(안 제3조제1호→ 제4호 가목, 나목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3. 2. 18 ~ 3. 7)결과 : 접수된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제6항 및”을 “제11조제6항과”로, “관할구역 안”을 “관할구역”으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보조함에 있어”를 “보조함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당해년도 당초”를 “해당연도 맨 처음”으로, “3퍼센트”를 “5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해 시”를 “위해 충주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증대

나. 특기·적성 교육 등 특성화 교육

제3조제3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사업 및”을 “사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개발 및 운영에 관한”을 “개발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주민 및”을 “주민과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타당성 여부”를 “타당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올리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9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충주시의회”로,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회 사무 처리를”을 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 유고 시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에”로, “작성 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여 갖춰 놓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일시 및”을 “일시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사항 및”을 “사항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”을 “보조금을 받으려는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, 보조받으려는 사업비, 자체 부담 사업비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예정일 및”을 “예정일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첨부하여야”를 “붙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보조금의 교부 결정)”을 “(보조금 지급 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목적에 위배되는지”를 “목적 위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할 때의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여부

제11조제2항 중 “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”를 “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”로, “교부”를 각각 “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필요한 경우”를 “필요하면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부받은”을 “받은”으로, “지체 없이”를 “바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부받은”을 “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교부”를 “지급”으로, “사용한”을 “사용하였을”로 하며, 같은 항

제2호 중 “중지한”을 “중지하였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

4. 그 밖에 보조사업의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교부”를 각각 “지급”으로, “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”를 “변경된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”으로, “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지급 결정의 전부·일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보조사업에 대하여는”을 “보조사업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정산 검사 및 감독)”을 “(정산 검사와 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교부받은”을 “받은”으로, “완료된 때에는”을 “완료되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정한”을 “적절한”로, “인정될”을 “인정할”로, “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”를 “받은 각급 학교에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”를 “위원에게 「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, “실비를”을 “실제 비용을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아니한 사항은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을”을 “앞은 그 밖의 사항은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충주시 <u>관할구역</u>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<u>보조함에 있어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11조제6항과</u> ----- ----- ----- <u>관할구역</u>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<u>보조함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보조 기준액의 제한) ①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(세외수입을 제외한다)의 3퍼센트</u>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조 기준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 교육 환경 개선을 <u>위해</u>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.</p> <p>③ <u>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·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2조(보조 기준액의 제한) ① -- ----- <u>해당연도 맨 처음</u> ----- ----- ----- <u>5퍼센트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해 충주시</u>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</p>	<p>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1. <u>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신장 및 특기·적성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사업</u></p>	<p><삭 제></p>
<p>2.·3. (생략)</p>	<p>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
<p>4. <u>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</u></p>	<p>3. ----- 사업과 -----</p>
<p>5. <u>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</u></p>	<p>4. 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가. <u>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증대</u></p>
<p><신 설></p>	<p>나. <u>특기·적성 교육 등 특성화 교육</u></p>
<p>6. <u>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</u></p>	<p>5. ----- <u>개발·운영</u> ----</p>
<p>7. <u>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 공간 설치 사업</u></p>	<p>6. ----- ----- <u>주민과</u> ----- -----</p>
<p>8. (생략)</p>	<p>7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	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<u>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</u></p>	<p>2. ----- <u>타당성</u> 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·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한 <u>9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, 예산담당과장, <u>시의회</u>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<u>2인</u>,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<u>3인</u>, 민간인(또는 학부모) <u>1인</u>을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</u>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<u>위원회 회무를</u> 통할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<u>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</u> 대행한다.</p> 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	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회의에 올리는</u> -----</p> 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1명</u>을 <u>포함한 9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충주시의회</u> -----<u>2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3명</u>----- <u>1명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</u> ----- -----<u>1명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--- ----- <u>위원회의 사무를</u> <u>총괄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</u> <u>수행할 수 없을 때</u> -----.</p> <p>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인정할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회의록) ----- ----- 때에 ----- -----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-----.</p>
<p>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심의 사항 및 결과</p> <p>4. (생략)</p>	<p>1. ----- 일시와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사항과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보조의 신청 등) ①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보조의 신청 등)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----- ----- -----.</p>
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</p> <p>4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</p> <p>5. (생략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, 보조받으려는 사업비, 자체 부담 사업비</p> <p>4. ----- 예정일과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</p>	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<u>첨부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보조사업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제11조(보조금의 교부 결정)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<u>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.</u></p> <p>1. 법령과 예산의 <u>목적에 위배</u> 되는지 여부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사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<u>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여부</u></p> <p>② 시장은 <u>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</u>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<u>교부 목적</u>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결정 시 <u>필요한 경우</u>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<u>붙여야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보조금 지급 결정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</u>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한다.</p> <p>1. ----- <u>목적 위배</u>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할 때의 <u>자기 자금 부담 능력 여부</u></p> <p>② ----- <u>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</u> ----- ----- <u>지급</u>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<u>필요하면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보조사업의 신고) 보조금을 <u>교부받은</u>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<u>지체 없이</u>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2조(보조사업의 신고) ----- <u>받은</u>----- ----- ----- --<u>바로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보조 결정의 변경·취소)</p> <p>① 시장은 보조금을 <u>교부받은</u>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조금을 <u>교부</u> 목적 외로 사용한 때</p> <p>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중지한</u> 때</p> <p>3. <u>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</u></p> <p>4.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<u>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</u></p> <p>② 시장은 보조금의 <u>교부</u> 결정 후에라도 <u>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</u> <u>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</u> 다만, 이미 수행된 부분의 <u>보조</u></p>	<p>제13조(보조 결정의 변경·취소)</p> <p>① -----<u>받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지급</u> ----- <u>사용하였을</u> --</p> <p>2. ----- <u>중지하였을</u> --</p> <p>3. <u>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</u></p> <p>4. 그 밖에 보조사업의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</p> <p>② ----- <u>지급</u> --- ----- <u>변경된 사정에 따라</u> <u>보조금 지급</u> ----- ----- ----- <u>지급 결정의</u> <u>전부·일부</u>----- ----- <u>보조</u>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과 관련 조문

- 의 안 명 :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관련조문

제2조(보조 기준액의 제한) ①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(세외 수입을 제외한다)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 내용

가. 비용발생의 요인

-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

나. 추계의 전제

- 2013년 일반회계 시세(지방세) 수입액 : 81,100백만원
- 예상 지원액

(단위 : 백만원)

2013년 당초 계획			5%	증감	비고
계(3.8%)	3%	교육복지투자			
3,049	2,433	616	4,055	1,006	

※ 교육복지투자 : 616백만원(부동산교부세 교부산정액)

⇒ 조례개정 후 예산증가 1,006백만원(1.2% 증가)

다. 추계의 결과

- 총 소요액 : 연 4,055백만원(시비+부동산교부세 교부산정액)
- 추가소요액: 연 1,006백만원(시비)

라. 추계의 상세내역 :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

3. 비용추계재원 : 전액시비(자체재원)

4. 작 성 자 : 기획행정국 총무과장 채 홍 국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 입(계)	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지방세	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세 출(계)	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	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재원 조달	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 조 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	자체재원 (지방세)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1,006,000	5,030,000
지 방 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

※ 연도별 지방세수입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
⑥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2.28>

제2조 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1998.9.17, 2000.12.27, 2007.12.28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- 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